

브루나이(Brunei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: 1955년(노령연금, 장애연금), 1992년(노동신탁기금), 2009년(보충기여연금기금, 2010년 시행)

2 제도형태

- 기초제도, 적립기금 및 강제개인계좌제도

3 적용대상

- 기초제도 : 브루나이 거주자
- 적립기금제도
 - 당연적용 : 55세 미만의 브루나이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공공 및 사적부문 근로자
 - 적용제외 : 자영자
 - ※ 군인, 경찰, 교도소장을 위한 특수제도 있음
- 강제개인계좌제도
 - 당연적용 : 60세 미만의 브루나이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공공 및 사적부문 근로자
 - 임의적용 : 자영자
 - 적용제외 : 공무원연금제도 가입한 근로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기초제도 : 없음
 - 적립기금제도
 - 월 기본급여의 5%, 추가 임의납부 가능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액, 상한액 없음
 - 강제개인계좌제도
 - 월 기본급여의 3.5%, 추가 임의납부 가능
 - 강제개인계좌제도의 근로자 및 사용자 납부금액 중 6/7이 노령연금 급여, 1/7이 유족급여의 재원이 됨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B\$2,800, 하한액은 없음

○ 자영자

- 기초제도 : 없음
- 적립기금제도 : 비대상
- 강제개인계좌제도 : 월 B\$17.50

○ 사용자

- 기초제도 : 없음
- 적립기금제도
 - 월 임금총액의 5%, 추가 임의납부 가능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액, 상한액 없음
- 강제개인계좌제도
 - 월 임금총액의 3.5% 또는 월 B\$17.50 중 더 큰 금액
 - 강제개인계좌제도의 근로자 및 사용자 납부금액 중 6/7이 노령연금 급여, 1/7이 유족 급여의 재원이 됨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B\$2,800, 하한액은 없음

○ 정부

- 기초제도 : 총 비용
 - 적립기금제도 :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
 - 강제개인계좌제도
 - 결혼금 총당; 월 소득 B\$500미만인 근로자 또는 B\$17.50인 자영자의 보험료 지원
- ※ 가입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2010년 1월 이전 적립기금제도 가입자에게 매월 B\$30씩 지급
※ 가입자가 적립기금제도에 가입한 때가 25세 미만인 경우, 보험료는 25세부터 산정됨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기초제도)
 - 브루나이에서 태어난 경우 청구 직전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60세 도달자
 - 브루나이 외에서 태어난 경우 최소 30년 이상이어야 함
- 노령연금(적립기금제도)
 - 55세 도달; 국외 이주한 경우 연령 관계없음
 - 조기인출은 50세 도달 시 가능
 - 가구인출 : 최소 10년 이상 가입자였으며 최소 5년 이상의 납부기간이 있거나, 계좌잔액이 B\$40,000 이상이어야 함
- 노령연금(강제개인계좌제도)
 - 연속 납부기간이 35년 이상인 60세 도달자
 - 조기인출 불가함
- 노령청산금(강제개인계좌제도) : 연속 납부기간이 35년 미만인인 60세 도달자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기초제도)
 - 15세 이상이고, 정신 또는 신체장애·시각장애·한센병 환자로 판정되어야 하며 근로가 불가능해야 함
 - 장애 발생 직전 브루나이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치료 및 재활을 받았어야 함
 - 부양가족보조금 : 정신장애·시각장애·한센병 환자로 판정된 부양가족에게 지급함
- 장애연금(적립기금제도)
 - 유족급여 : 신체, 정신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해야 함
 - 의학위원회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함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적립기금제도)
 -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친인척 또는 지정된 유족에게 지급됨
- 유족연금(강제개인계좌제도)
 - 가입자가 퇴직연령 도달 전 사망했으며 사망한 달까지 계속 납부한 경우 지급
 - 유족연금 수급대상 : 미망인 및 21세 미만 자녀
 - 미망인 연금은 재혼 시 중단되고 그다음 유족에게 재분배됨
- 유족청산금(파생연금, 강제개인계좌제도)
 - 가입자가 퇴직연령 도달 전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정된 유족에게 지급됨

6 **급여종류별 지급액**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기초제도)
 - 매월 B\$250 지급
 - 급여조정 :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됨
- 노령연금(적립기금제도)
 - 근로자 및 사용자 총 기여금에 발생 이자 합친 금액에서 이전 인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
 - 조기인출은 축적된 금액의 25%까지 인출 가능
 - 가구인출 : 집을 구매하거나 건축하기 위해 55세 전 축적된 금액의 45%까지 한번에 인출 가능
 - 이자율조정 : 노동신탁기금 위원회에서 매년 기금 재정안전성 및 저축계좌 이자율, 물가상승률에 따라 적용
- 노령연금(강제개인계좌제도)
 - 퇴직 시 가입자의 계좌잔액에 따라 월 연금액이 지급됨
 - 최소 월 노령연금액 : B\$150
- 노령청산금(강제개인계좌제도) : 개인계좌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기초제도)
 - 매월 B\$250 지급
 - 부양가족보조금 : 피부양 배우자 또는 15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에게 월 B\$188 지급; 자녀가 15세 미만인 경우 월 B\$113 지급
 - 급여조정 :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됨
- 장애연금(적립기금제도)
 - 근로자 및 사용자 총 기여금에 발생 이자 합친 금액에서 이전 인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
 - 이자율조정 : 노동신탁기금 위원회에서 매년 기금 재정안전성 및 저축계좌 이자율, 물가상승률에 따라 적용

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적립기금제도)
 - 근로자 및 사용자 총 기여금에 발생 이자 합친 금액에서 이전 인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
 - 이자율조정 : 노동신탁기금 위원회에서 매년 기금 재정안전성 및 저축계좌 이자율, 물가상승률에 따라 적용
- 유족연금(강제개인계좌제도)
 - 사망일로부터 15년동안 월 B\$400씩 지급
 - 모든 유족대상에게 균등 지급함
- 유족청산금(파생급여, 강제개인계좌제도)
 - 근로자 및 사용자 총 기여금에 발생 이자 합친 금액에서 이전 인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○ 노동신탁기금(Employees' Trust Fund Department)

- 재무부 소속으로 노동신탁기금 위원회 감독 하에 적립기금 및 강제개인계좌 징수, 급여, 기금투자 관리
- <https://www.tap.com.bn/>

○ 지역개발부(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)

- 문화청소년체육부 소속으로 기초제도 관리